

## 알선 · 조정 · 중재 · 주선

글 · 정영철 이사 동아전기공업(주)

국어대사전을 보면 알선(翰旋:intercession)의 의미는 <남의 일을 잘 되도록 마련하여 줌. 주선>이라고 쓰여져 있다. 법률 용어로서의 알선(mediation ; arrangement)도 대체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흔히 쓰이고 있다.

즉 당사자간에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상의가 원활히 되도록 제3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주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알선이 사용되고 있는 예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10호의 '정당한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

알선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의가 원활히 되도록 주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형법제362조2항의 알선은 장물의 유사적인 법률상의 처분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매매, 교환, 입질 등을 매개주선하는 것이라 해석되며 주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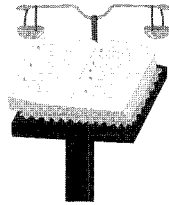
다음에 조정(調停)이라 하는 용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53~61), 가사소

송법 제4편(49~61), 민사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제3장(30~35)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어대사전에서는 조정(conciliation;mediation)의 의미는 <분쟁의 중간에 서서 화해시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틀어진 사이의 중간에 들어 화해(和解)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앞서 말한 알선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조정과 알선의 차이점의 하나는 조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 전제인데 대하여 알선은 반드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정도 분쟁이 있는 당사자의 호양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 붙이는지의 여부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로서 분쟁의 당사자에게 일응 조정의 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조정(調停)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알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안이 제시되어도 분쟁의 양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과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야만 비로소 생긴다.

다시말해서 조정은 민사의 다툼을 법원이나 그 밖의 공적(公的)인 기관이 중간에 들어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원만하게 화해시키는 일이다. 중재와 달라서 해결안은 당사자의 승낙을 기다려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강제조정(強制調停: compulsory mediation)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구차지가조정같은 것이다. 조정의 법적 효과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수락에 따른 사법적인 효과 이외에 다시 법률상 어떤 강한 공적인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는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종인은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수락에 따른 사법적 효과 이외에 다시 법률상 공적인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알선의 경우에는 수락하여도 사법상의 계약적인 효과가 생기는 일은 있다. 그러나 그 이

상의 공적인 법률상의 구속력이 생기는 일은 없는 것이 양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仲裁: arbitration; reconciliation)의 의미는 국어대사전을 보면 '다툼질의 사이에 들어 화해를 붙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란 용어도 일상 용어로서는 조정과는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용어로서는 양자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법률용어로서 중재라 함은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에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긴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데 대하여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62~70,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가 바로 이것이다.

중재는 이와 같이 제3자의 판단이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분쟁을 중재의 절차에 붙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중재의 절차에 붙이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노동관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끝으로 알선과 유사한 용어에 주선(周旋: mediation; agency)이라는 것이 있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주선의 의미는 '일이 잘 되도록 이리저리 힘을 써서 변통해 주는 일'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일이 잘 되도록 마련하는 일인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운데서 중재 알선하는 것이다. 이 주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상법 제114조에 사용되고 있다.